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5. . .<br>(제 회) |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해양수산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대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전문기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규정(안 제2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항로표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

표지기술원 등을 지정함.

다.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으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과 관광객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라.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공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활용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설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작성할 경우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측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계획 공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마. 조성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5조)

조성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해양오염 방

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적합여부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준공확인(안 제19조)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안 제20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예정구역의 위치를 변경(변경 전후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등대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항로표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4.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조성구역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촌·연안지역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절할 것
4.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변경)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 조성구역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4.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5. 조성구역의 관리·운영 방법
6.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7.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성구역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변경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조성구역 지정·변경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 지정의 목적
3. 조성구역 변경의 사유(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성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5. 조성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현황
6.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제7조(조성구역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
2. 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제8조(의견 수렴)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 조성구역 내 사업수요에 관한 사항
4. 조성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5.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방향 및 목표
6. 등대해양문화공간 활용계획
7.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8. 조성구역의 교통처리계획
9. 조성구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계획

10. 조성구역 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물종합배치도(축적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11. 조성구역 내 기반시설(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등) 및 편의시설(방범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계획

12. 조성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 계획

13. 조성구역 내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부 목록

1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조성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조사의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면접조사

3. 현지조사

4. 통계조사

5. 문헌조사

6. 우편조사

제12조(토지등의 조사·측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면 목적과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목적과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토지의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조성계획의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조성계획의 개요(조성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조성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조성계획에 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4. 조성계획서 작성 지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조성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조성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이동이 쉬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성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시행자의 토지·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보상 계획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제1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내용 변경
3.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 변경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5. 사업 시행 구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

업 시행 면적의 정정

6.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정공정표
2.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 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조감도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4.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2.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3.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5.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연구회·전시회·발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6. 국립등대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7.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립등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등대박물관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보존·관리
2.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향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 대관 및 사용 허가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br>위반 |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br>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가<br>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br>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br>제1항 | 250         | 350   | 50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0 - 5878 |